



##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

- ▶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8.24)**
  - 킬러규제 Top-15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6개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포함한 3가지 안건 발표
- ▶ **(산단 입지규제 해소)** 30년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
  - ①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②입주업종 대상여부 판단을 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전문가가 신속·합리적으로 결정
  - ③카페·체육관 등 문화·여가시설 설치가능 면적 대폭 확대(3만 → 최대 10만㎡)
- ▶ **(환경규제 혁파)**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혁파
  - ①EU수준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등 → 3,000억원 비용절감(~'30)
  - ②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로 제정 등 → 8.5조원 경제효과(~'30)
  - ③첨단산단 신설에 따른 용수공급문제 해소 등 → 15개 첨단산단 조기준공 지원
- ▶ **(고용규제 개선)**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혁신
  - **(외국인력 도입 확대)** ①전문인력 확보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2천 → 3만5천명 전환규모 확대, ②외국인력 쿼터 확대('23.4Q 3만명에서 1만명 추가 등)
  - **(규모·업종별 외국인력 활용)** 규모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활용인원 2배 확대, 업종택배 상·하차 직종 허용, 관광숙박분야 활용방안 검토
  - **(유학생)** ①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허용, ②첨단분야 우수인재 가족 취업허용

□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③ 환경영향평가 규제, ④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⑤ 외국인 고용규제, ⑥ 산업안전 규제

○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7.5)하여 다양한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7.4)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시급한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7.14)하였고,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오고 있다.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 8.24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트다”를 모토로, 킬러규제 혁파방안 3가지 안건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

①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킬러환경영향평가 규제, 킬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③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 킬러외국인 고용규제, 킬러산업안전 규제

□ 오늘 발표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 산업부·국토부는 산단을 30년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이 산단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①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사례]하고, ②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례] 광양국가산단에 제철관련 산업 외에 이차전지·수소생산사업 허용  
→ 4.4조원의 투자 창출

-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 등)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3만 → 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사례]한다.

\* 개발계획 변경(통상 1년) 없이 토지용도를 전환(산업→지원용지)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사례] A산단은 노후화에 따라 추가적인 문화·편의·생산지원시설 개발 필요하였으나 시간·비용 과다 → 신속하게 카페·체육관 및 정보처리·유통시설 등 확충 가능

-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①1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②지방정부에서 고유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 예) 독일 아우토슈타트(Autostadt) : 볼프스부르크市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 → 연간 200만명 이상 방문, 독일 10대 관광명소

## 2.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 환경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한다.

①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1t으로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기대효과2]한다. ⇨ 3,000억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30년)

-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여,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것이다.

[기대효과1] EU수준 등록기준 완화(0.1t→1t)로 약 700개 기업 2,000억 비용절감 전망

[기대효과2] 정부주도 해외자료 확보로 1만6천여개 기업의 1,000억원 비용절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선한다. ①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②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 또한, ③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①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하였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기대효과1]하고, ②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을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기대효과2]한다. ⇨ 8.5조원 경제효과 창출 전망(~'30년)

- 또한, ③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사례]하여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대효과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완화, 누적 7.7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

[기대효과2]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예 : 3ppm → 5ppm), 누적 8천억원 운영비 절감 전망

[사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5만t의 용수 필요

→ 상류댐(화천댐)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등 용수공급방안 선제마련

### 3.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 법무부와 고용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일자리가 21.3만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한다. ①’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2천명 → 3만5천명)를 신속히 완료하고, ②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확대\*(’23.4분기 신규쿼터 1만명 확대 : ’23.4Q 3만명 → 4만명)한다.
- \* ’24년 쿼터도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12만명 + α)
- ③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되었던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①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하였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 \*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서비스업) 2~30명 → 4~75명
- ②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①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 하고, ②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 \*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약 16%로 저조
-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 ①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②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를 철폐[사례]한다.

\* 타법상 안전 교육 이수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이수 → 교육시간 면제

[사례]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비상구 35개를 피난계단 18개로 대체해 공장 1개 건축 시 2,850억원 절감

- 각 안건 발표 후 기업, 경제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기업애로 해소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오늘 나온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보다 단축시켜 나가겠다.
  - 정부내 조치로 완료될 수 있는 법령들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혁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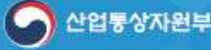
※ 붙임 1: 킬러규제 Top-15  
 붙임 2: 분야별 인포그래픽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정대현 (044-200-2397)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신현우 (044-203-4432)
<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044-201-3675)
<환경>	환경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7)
<비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2-2110-4062)
<고용>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7064)
		담당자	사무관	유연희 (044-202-7060)


: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4) 발표내용

분류	킬러규제명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환경	⑪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노동	⑭ 외국인 고용규제 ⑮ 산업안전 규제

### 1. 산업 입지 킬러규제 혁파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

## 킬러규제: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 제약
- 편의·복지시설 확충 곤란
- 지방정부 역할 제한

➔

개선  
방향

- 1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 촉진하는 산업
- 2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업
- 3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 1 |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 촉진하는 산업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기업의 투자 장벽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업종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 → 전문가 위원회 통해 입주가능 여부 신속 판단</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기반시설 영향 없는 업종 → 원칙적 입주 허용 체계 마련</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산업 입주 허용업종 → 5년 주기 재검토</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법률, 회계 등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 →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 신청요건 완화 및 대상구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공장 자산 유통화 도입 매각 후 임대(Sale &amp; Leaseback) 허용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지원 * 임차 기간 보장, 우선 매수권 부여 등 임차기업 보호장치도 동시 마련</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연접기업 토지 임차 허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의 생산 및 부대시설 증설 촉진</li> <li><span style="color: #0070c0;">■</span> 개별기업 전용산업 입주제한 완화 첨단 기술 및 저탄소녹색 기술 분야 기업 입주 허용</li> </ul>

### 2 |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업

편의시설 용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 촉진	편의·복지시설 확충
<p>① 토지용도 전환(산업 → 지원)</p> <p><b>현황</b> 국가·일반산업: 누적 3만㎡ 동일</p> <p><b>개선</b> 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p> <p>② 복합용지 신설(산업 + 지원)</p> <p><b>현황</b>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계획 변경 필요</p> <p><b>개선</b> 개발계획 변경 없는 신설방안 도입</p>	<p>정부 마중물 투자 확대 산업 환경 개선펀드 지속 확대</p> <p>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총수익-총비용, 일시납 → 지가차액 일정비율, 연납·분납 가능</p>	<p>구조고도화사업 활성화 산업 전체면적의 10% → 30%</p> <p>대규모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재생계획과 활성화계획 동시 수립 (2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p> <p>지방정부 등의 투자 부담 완화 주차장, 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 면제</p>

### 3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국가산업 개발계획 변경권한 지방위임 확대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추진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업 조성
<p>현재 18개 산업 → 준공 후 10년 경과한 31개 산업으로 대상 확대</p>	<p>지방정부가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혁신사업 제시 → 중앙정부 종합 지원</p>	<p>산업별 고유가치 브랜드화 → 지역주민, 청년이 즐기는 테마공간</p>



## 2.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국민안전 등 환경정책 목표는 확고히 지키면서  
**민간투자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

**과학기술·데이터 기반**  
'성과 중심 규제로 전환'

**구조개혁 + 관행개선**  
'법률부터 지침까지 신속 개선'

**현장 체감도 제고**  
'국민·기업의 목소리 우선 수용'

### 덩어리 규제 혁신

#### 1 화학물질 규제 국민안전 확보하면서 3,000억원 이상 경제효과 유발(~'30)



##### 위험비례 차등관리

- ◆ 등록기준 완화 (0.1t → 1t)  
▶ 2,000억원 경제효과 기대(~'30)
- ◆ 관리기준 차등화  
▶ 현장적용성 제고로 안전공백 해소



##### 등록비용 부담 경감

- ◆ 해외 공개자료 구매비용 부담 완화  
▶ 1,000억원 절감(~'30)
- ◆ 자료생산 지원 확대 (기존 → 기존+신규)  
▶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2 환경영향평가 구조개혁과 관행혁파로 검토는 내실화, 민간·지방 투자는 활성화



##### 평가체계 개편

- ◆ 간이평가 도입, 지방이양  
▶ 평가 부담 완화
- ◆ 평가면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재난대응 강화



##### 현장관행 혁파

- ◆ 이의 신청, 조정절차 신설  
▶ 평가 합리성 제고
- ◆ 민간·재정사업 간 차별 해소  
▶ 하수도 등 민간인프라 투자 촉진

### 핀포인트 규제혁신

#### 3 첨단산업 지원 규제개선·산단조성 지원을 통해 8.5조원 경제효과 기대(~'30년)

##### 첨단업종 규제 개선

- ◆ 디스플레이 특화고시 제정 ▶ 연 1.1조원 경제효과
- ◆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 연 최대 1,250억원 절감
- ◆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 촉진



##### 산단조성 선제 지원

-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차질없는 용수공급
- ◆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fast-track)
- ◆ 첨단산단 조성 전담지원반 운영



#### 4 탄소중립 전환 친환경 투자 활성화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유도

##### 탄소중립 투자 촉진

- ◆ 배출권 이월가능량 및 시장 참여자 확대\*  
\*위탁거래 도입('23) → 금융기관 등 참여('24-) → 개인 등 단계적 확대('25-)
- ◆ 감축설비 지원 대상 등 확대



##### 순환경제 가속화

- ◆ 폐배터리 핵심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 ◆ 신산업 규제 해소로 순환경제 시장 형성  
\*폐이류 자원재사용 등



### 3.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 개혁 목표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이랬던 규제가 이렇게 바뀌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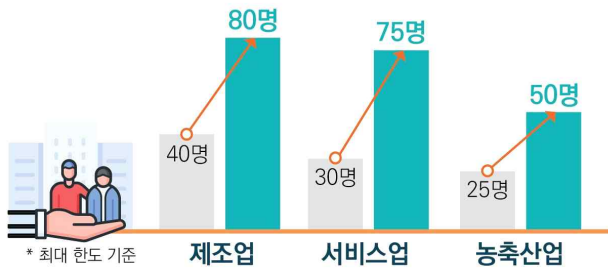


## 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편

###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 총 공급규모 확대

'23년 11만명 + 1만명 추가 확대



###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 가능



###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 장기근속 특례 신설로 숙련 인력 활용 지원



###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해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

- 입국 전** 현지 직업훈련 대상국 확대, 실습장비·훈련교사 역량 강화
- 입국 후** 기술훈련, 한국어·문화 교육 지원 확대
- 재직 시** 전기·전자 등 5개 직종 외 훈련직종 추가 확대

###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 상시 분석체계 구축

- 상시 수요 조사
- 전문가 심층 분석
- 허용 업종·규모 적기 결정



### 절차 간소화

- 부처간 전산 연계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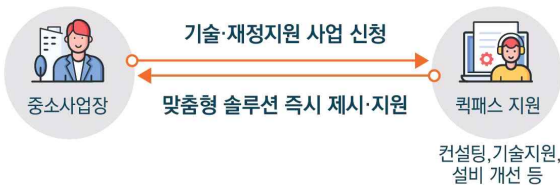
## 산업안전 규제혁신

### 넓은 산업안전보건 기준 전면 개편



기술 발전,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680여개 산업안전 규정 선진화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 핵심산업 현장 애로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 릴레이 개선

#### 반도체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건설



기술변화 및 실제 현장의 작업방식을 반영한 발파작업 안전기준 현행화

#### 화학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 의무 면제 등